

의안번호	제 752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발 의 자	이광희 의원 등 6인
발의연월일	2017년 11월 21일

#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52
----------	-----

발의연월일 : 2017년 11월 21일

발의자 : 이광희, 김영주, 이양섭,  
박우양, 박종규, 윤은희

## 1. 제정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안정을 돕고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 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함 (안 제4조)
- 다. 구매실적 및 구매목표 비율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 라.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한 구매 확대 개선조치 요구 및 구매실적 공표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6조)
-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및 판매시설에 대하여 기능보강, 기술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
- 바. 도에 소재하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
- 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고, 생산 및 구매 촉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등을 포상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입법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7-72호

다. 협의 :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함.

라. 비용추계서 : 붙임

##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그 소속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

인생산물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으로 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개별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우선구매 촉진 등)**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 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우선구매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반기별로 파악하여 구매실적이 제5조의 구매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애계 구매를 늘리기 위한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기별로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공표 할 수 있다.

**제7조(생산·유통 및 판매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 생산과 품질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

2.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사업
3.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마케팅 및 유통체계 확보 지원 사업
4. 중증장애인생산품 관련 분야 전문가 양성 교육 사업 등

**제8조(구매 협조 요청)**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도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및 그 밖에 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취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 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고하



여야 한다.

- ⑤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한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 가. 국가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 장애인복지법

제44조(생산품 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한다.

#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

## 2. 비용 발생 요인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기능보강 사업, 장애인생산품 판매활성화 사업

## 3. 관련조문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장애인복지법 제44조
- 가칭)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7조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기능보강 사업, 장애인생산품 판매활성화 사업 지원의 소요경비 산출

### 나. 추계 결과 : 5개년 지원액 평균치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비 지원 : 161,470천원(매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 10,197,663천원(매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기능보강 지원 : 1,808,132천원(매년)
- 장애인생산품 판매활성화 지원 : 40,000천원(매년)

### 다. 재원조달방안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비 지원 : 국비 40%, 도비 60%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 도비 6%, 시군비 94%
-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기능보강 지원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장애인생산품 판매활성화 지원 : 도비 100%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6.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장 최 영 지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9,228,604	12,467,225	11,960,246	13,072,709	14,307,544	61,036,328
국 비		539,395	1,641,918	887,319	887,319	887,319	4,843,270
도 비		763,976	1,164,610	990,500	1,057,247	1,131,337	5,107,670
시군비		7,925,233	9,660,697	10,082,427	11,128,143	12,288,888	51,085,388
<b>세 출</b>		<b>9,228,604</b>	<b>12,467,225</b>	<b>11,960,246</b>	<b>13,072,709</b>	<b>14,307,544</b>	<b>61,036,328</b>
판매시설 운영비		161,470	161,470	161,470	161,470	161,470	807,350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8,077,520	9,111,094	10,113,314	11,225,777	12,460,612	50,988,317
기능보강 사업비		949,614	3,154,661	1,645,462	1,645,462	1,645,462	9,040,661
판매활성화 사업비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b>재원 조달</b>		<b>9,228,604</b>	<b>12,467,225</b>	<b>11,960,246</b>	<b>13,072,709</b>	<b>14,307,544</b>	<b>61,036,328</b>
의존 재원	소 계	539,395	1,641,918	887,319	887,319	887,319	4,843,270
	보조금	539,395	1,641,918	887,319	887,319	887,319	4,843,27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763,976	1,164,610	990,500	1,057,247	1,131,337	5,107,670
	지방세	763,976	1,164,610	990,500	1,057,247	1,131,337	5,107,67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시·군비		7,925,233	9,660,697	10,082,427	11,128,143	12,288,888	51,085,388
기 타 (민간 자부담)							